

2014 학교폭력예방 기본 계획

I. 일반 계획

1 관련근거

- ◇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(학교폭력 예방교육 등) 및 동법 시행령
- ◇ 2014 경기도 학교폭력예방대책시행계획-학교인권지원과-4075(2014. 4. 1.)

2 목적

- 가)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으로 학생의 인권존중 및 안정적인 학교 풍토를 조성하여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.
- 나) 학생을 완전한 인격체로 존중하여 머물고 싶은 학교, 가고 싶은 학교, 오고 싶은 학교 문화를 조성한다.
- 다) 학교 내 체벌, 언어폭력, 학교폭력 근절로 학교생활 불안감을 해소 한다.
- 라) 지도보다는 대화와 상담, 자율과 책임에 의한 생활인권 교육을 실시한다.
- 마) 교육공동체의 인권선언 등, 참여와 강화를 통해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한다.

3 운영방침

- 가)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의 체계적 시행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실태를 점검한다.
- 나) 책임 있는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하여 전교직원 및 학생 등에 대한 장애학생 범죄예방 및 인권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교원의 학생 인권 인식을 제고 시킨다.
- 다) 인권 침해 예방과 조치를 위하여 인권침해 신고·지원 시스템으로 학생생활인권규정과 인권 소리함을 운영한다.
- 라) 유관기관과 학교폭력 예방·근절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가정·학교·사회의 연계 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바른 생활태도 함양을 위해 노력한다.
- 마) 존중·자율·책임·배려가 있는 학교 풍토 조성을 통한 학생생활지도를 전개하고, 생활인권교사(주변교사) 및 배움터지킴이를 통해 정기적인 교내순찰을 실시한다.
- 바) 학생상담 및 인성교육 활성화로 학생폭력 및 비행의 근원적 예방을 하며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하에 철저히 대응한다.



활동내용

구분	활동내용	비고
학교폭력예방대책	• 학생 안전을 위한 순찰 강화(주변교사 및 배움터지킴이) • 인권 소리함 및 교내 사각지대 CCTV 설치 • 정기적 학교폭력예방 교육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•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• 학교 홈페이지 학생 인권 관련 팝업창 설치 • 전교직원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장애학생범죄예방 및 인권 보호 교육 정기적 실시	연중
학생준중문화정착	• 학생들에게 경어 사용 권장 • 각종 두발 및 복장 등의 획일적 규제 금지	매월 첫 주 조회 시 연중
기본 좋은 등· 하교 지도	• 등·하교 시 안전 및 예절지도 실시 - 등·하교 시 통학버스까지 학생 맞이 인사 및 배웅하기 • 등·하교 타임피크제 실시 - 등·하교시간 학교 출입차량 통행 제한	매일
‘친구사랑의 날’	• 친구사랑 마인드 갖기 • 친구 간 고운 말 쓰기 약속 • 친구의 장점을 찾아 홍보자료로 제작하여 발표	4월 2일(친구 <u>사이</u>) 7월 9일(친한 <u>친구</u>) 9월 4일(친구 <u>사랑</u>) 11월 11일(친구와 <u>함께</u>)
학생자치회	• 학생들의 의견(고충, 불만, 건의사항 등) 수렴 방법 다양화 추구 • 학칙을 준수하는 학교 전통 확립 • 학칙에 대한 교원연수 정례화(학기당 1회 이상)	
모범학생 표창	• 청소년의 달, 1학기 말, 2학기말에 모범학생 표창 •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 및 실적을 고려하여 표창 • 표창 시기 : 청소년의 달, 1학기 말, 2학기말 • 표창 인원 : 학급별 1명 • 표창 분야 : 8개 분야 (효행, 봉사, 선행, 자립, 학업, 체육, 예능, 기능)	
학교 방문증 제도	• 교직원은 명찰, 외부인 방문증 패용을 의무화 • 무단 외부인 식별요령 교육, 신고, 단속 등 관리 철저 • 학교 내 출입 외부인 방문증 교부(경비실) → 미착용자 발견 신고(학교구성원)	학기 중
배움터지킴이 운영	• 학생 등·하교 지도 및 취약 시간대에 학교 내외 순시·순찰 • 외부 방문자 교내 출입 관리 및 민원 안내 •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등 각종 범죄 비행 등을 현장에서 예방·제지하여 불량 서클 결성, 집단따돌림 등 상습화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 • 기타 학생 생활지도 및 학교 안전을 위한 활동 등	학기 중
문화공연	• 문화행사 참여를 통한 정서순화의 기회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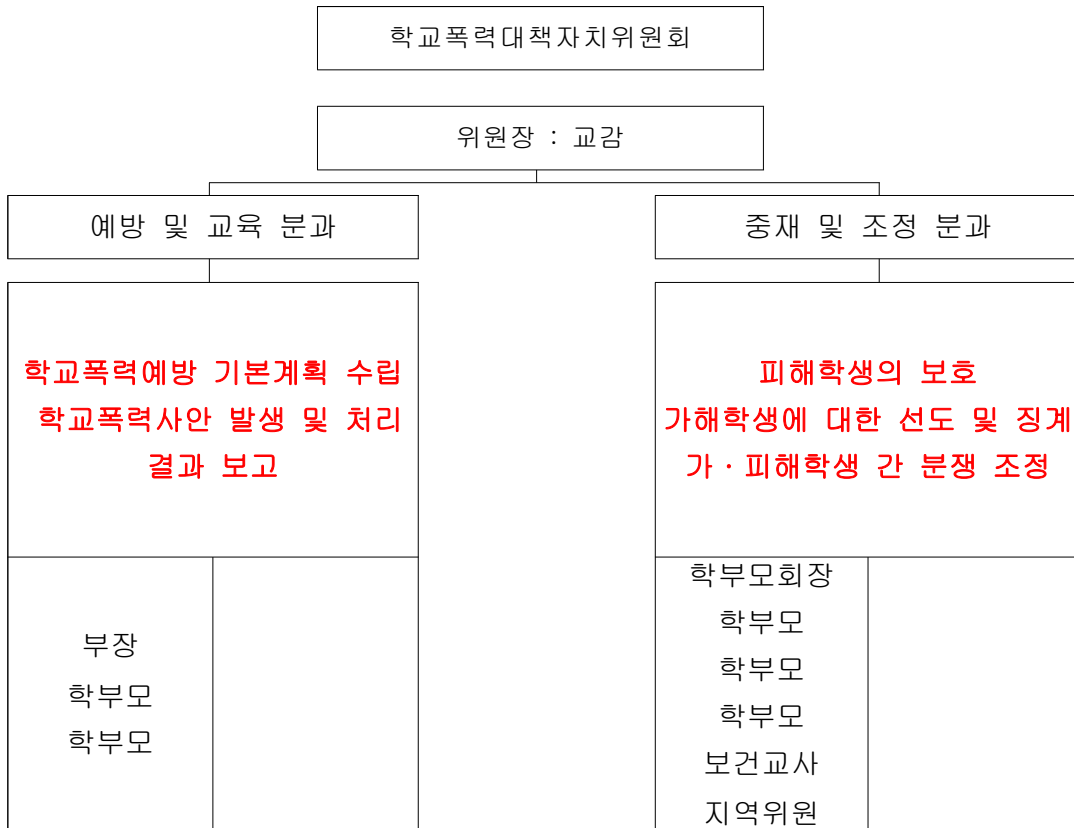


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

가. 근거

-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(제8887호)및 동법 시행령(제21003호)

나. 구성



다. 자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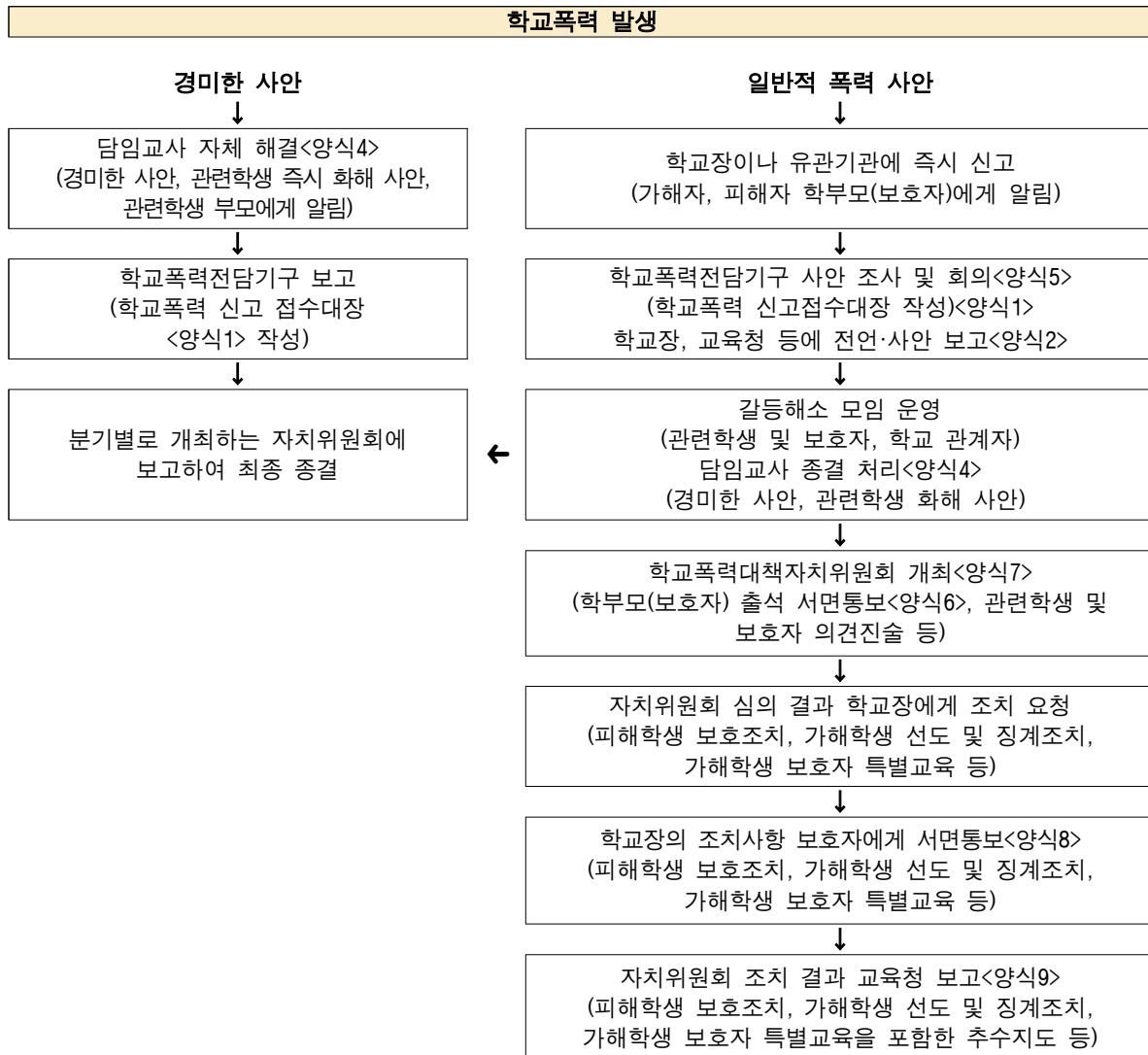
- 해당 학교의 교감
-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교사
- 학부모전체회의(또는 학부모대표회의)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
- 법조인, 의료인
-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
- 그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

라. 역할

-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심의
-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조치
-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

- 분기별 1회 이상 회의 개최를 통한 학교폭력실태 점검
- 학교폭력의 신고 및 비밀 엄수 의무
-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

라.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



● 중대사안 보고

- 학생 사망, 안전사고, 학교폭력 관련 사안, 집단으로 발생한 사안<양식 2>
- 사안이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<양식 3>

● 보고 요령

- 발생 즉시 전언 보고
 - 초·중학교 : 교육지원청 생활인권담당
 - 고등학교 : 도교육청 학교인권지원과(249-0210~3, 249-0912~5)
- 표지 공문 없이 직인 찍어 FAX로 보고
 - 초·중학교 : 교육지원청 생활인권담당
 - 고등학교 : 도교육청 학교인권지원과(FAX 031-249-0394)
 - 교육지원청 : 초·중학교 중대 사안은 도교육청으로 보고

마. 임기

- 2014. 3. 1. ~ 2016. 2. 28.(2년)



학교폭력전담기구

가. 구성(5명)

- 교감(김봉환), 책임교사(전명주), 보건교사(박선자), 상담교사(최현정), 상담사(박두석)으로 학교폭력문제를 전담하는 기구(이하 “전담기구”)를 구성.상시 운영

나. 회의 개최

- 필요시 또는 사안이 접수되면 즉시 임시회의 개최

다.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역할

학교폭력 신고 접수 및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통보	■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을 비치하고 117신고센터, 학교장, 교사, 학생, 학부모, 외부인으로부터 신고받은 사안에 대해 기록·관리함(비공개) ■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은 학교장, 교원의 학교폭력 은폐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, 사소한 폭력이라도 신고한 것은 접수하여야 함 ■ 접수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통보하고, 통보일자, 통보방법 등 통보 사실을 기록함
학교폭력 사안조사	■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하여야 함. 이 경우, 담임교사의 협조를 구할 수 있음 ■ 책임교사 : 사안의 조사를 총괄하며, 조사방향을 정하며, 조사한 결과를 학교장 및 자치위원회에 보고함 ■ 보건담당교사 : 피해·가해학생의 신체적, 정신적 피해상황을 파악하고, 필요시 전문기관에 의뢰
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개최전 사전 심의	■ 신고된 학교폭력사안에 대해 사전 심의를 실시하고, 심의 내용을 상황보고서로 작성하여 학교장 및 자치위원장에게 보고
집중 보호 또는 관찰 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	■ 해당 학생 담임교사와 함께 생활지도 누가기록카드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상담 등 실시

라.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의 역할

- 책임교사

- 폭력 사안의 조사 방향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, 사안 조사 시 피해·가해학생의 담임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등의 협조를 얻어 사안의 진상을 조사하는 등 전반적으로 총괄
- 학교폭력 상황, 주위 학생 안전 및 질서 유지, 진행상황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증인 및 증거자료 확보 후 자치위원회에 보고

- 보건교사

- 피해·가해학생의 신체적·정신적 상황을 파악하고, 피해학생을 신속하게 응급조치한 후 전문기관에 의뢰
- 긴급한 사안의 경우 119에 연락을 취하고 피해학생 병원 이송 시 동승

마.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

- 가해학생·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·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에 유의(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제21조, 제22조)



3 학교폭력피해 신고망 구축 및 상담 체제의 활성화

항 목	실 천 내 용	기간	목표	비고
1. 학교폭력 피해 신고망 구축	- 학교 내 신고 체제 확립 - 각종 신고처 학교, 학급에 상시 비치	3월	수시	학급 게시
2. 상담활동 강화	- 학생 이해 자료 확보 - Wee센터 운영 - 상담 환경 조성 - 상담일지 기록	연중	수시	주기적, 계획적, 상담활동전개



4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

항 목	실 천 내 용	기간	목표	비고
1. 학생이해 자료 확보	- 위기가정, 결손가정, 부적응학생 파악 - 교우관계 및 학생개인상황 수시 파악 - 결석생에 대한 가정과의 연계지도(결석생에 대한 지도자료 기록, 장기결석 및 반복적인 결석생에 대한 지도 강화 및 지도자료 기록) - 또래 또는 개별 학생 상담 활동 주기적 실시	연중	수시	담임교사 지도 내용, 상담 내용 누가 기록(경영록)
2. 설문조사	-학생 폭력 관련 -흡연, 음주, 약물 복용 관련	6월/10월 6월	2회 1회	지도대책수립
3. 학교폭력 예방교육	- 학급문화시간활용 - 학교생활규정 안내 및 준수 - 폭력 피해 발생 시 대처요령 -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	자치활동 3월 연중 연중	매주 1회 2회	학급 전교생
4.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	- 올바른 성의식, - 건전한 성 태도 - 분별력 있는 성윤리 의식 - 교직원 연수 연1회	연중	15시간	세부추진계획-보건
5. 정보통신 윤리교육 강화	- 교과, 재량, 특활 등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 - 정보통신보호법 및 인터넷예절교육 - 각종 유해매체로부터의 차단	연중	수시	교과 재량활동 시 지도
6.학부모 교육	- 학교폭력예방교육 - 가정통신문 발송	연중 3월,9월	수시 2회	학부모 모임 시에 항상 홍보



5 친구 사랑 주간 운영

가. 개요

-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추진 방안(2012.2.27.)에 따라 ‘사소한 괴롭힘’도 폭력임을 단계적인 교육으로 추진하는 ‘친구사랑주간’ 운영
- 새학기를 맞이하여 학생들의 부적응 및 학교 폭력 발생 요인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다양한 친교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 활동 요구

나. 방침

- 분기별(3,7,9,12) 4회 실시
- 형식과 실적위주의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, 내실있게 운영



가족사랑주간 운영

가. 목적

- 부모와 자녀의 상호 이해, 기본예절교육 등 가정의 교육적 기능 회복
-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배려와 소통의 바른 인성 함양
- 건전하고 건강한 가치관 확립으로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

나. 방침

- 가정의 교육적 기능회복을 위해 학부모 대상 계도
-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확보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
- 결손가정, 다문화 학생에 대한 지도 배려
- 가정폭력예방

다. 내용

- 가족과 함께하는 걷기대회 실시
- 밥상머리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-사제동행급식
- 학교설명회, 학부모총회, 학부모상담을 통한 홍보와 참여



문화공연관람을 통한 정서순화

가. 목적

- 문화공연관람을 통한 정서순화로 문제행동 감소
- 문화공연 관람을 통한 꿈을 키우는 기회 제공

나. 방침

-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섭외하여 다양한 문화공연 관람 기회 제공